

# “학살 주범 죽었으니 관련자들 이젠 진실 고백해야”

### 오월단체 “진실 묻혀선 안돼...규명 계속돼야” 성명 광주 시민단체·노동계,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반대

“광주는 그날의 진실을 듣지 못했다” 12·12쿠테타와 5·18유혈전입의 핵심 책임자인 전두환(90)씨가 사망했다. 전씨가 국민들 바람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숨졌지만, 5·18의 진실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오월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5·18의 진실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월 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학살자 전두환은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면서 “죽더라도 5·18 진실을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씨가 죄값을 치르기 전에 사망해 유감스럽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가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전씨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국민을 살인하고 내란 죄를 선고받은 자가 사죄 한마디 없이 죽었다”면서 “5·18 발표명령자부터 암매장, 행불사 등에 대한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 5월 영령과 광주시민에 대해

저지른 죄에 대해 사후라도 단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과 노동계에서는 전두환씨의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지역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두환이 차가운 감방이 아니라 편안한 집에서 천수를 누리다 죽었다”며 “자신의 권력과 이권을 위해 시민들을 학살하고 반대자들을 감옥에 가둔 독재자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부끄러움”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전씨는 최근 사망한 노태우 씨와 달리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학살 명령 행위를 부정하고 5·18을 왜곡·능멸했다”면서 “법의 이름으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한다면 현 정부를 민주주의 파괴 정부로 규정하고 투쟁할 것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화조차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치권은 하루빨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합의하고, 여전히 왜곡과 편협이 끊이지 않는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우식 참여자21 사무처장은 “후회호식을 누리던 전씨의 죽음은 현대한국사의 비극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역사”라면서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5·18 진실 규명을 제대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환씨가 사망한 23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사과 없이 사망한 전두환 씨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민주노동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노태우 국가장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한다”며 “전두환의 죽음에 침묵하라”고 국가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321일에 걸친 농성기간 동안 37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5·18행동의 날’ 행사를

연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등의 행동을 벌여온 (사)5·18민주화운동서술기념사업회는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는 “전두환의 피해자는 5·18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 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백골단에 의한 노동탄압

과 철거민 탄압 등 전국에 걸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으며, 피해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지새웠다”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일말의 사죄도 하지 않은 만고의 죄인인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한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의 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두환 형사재판 ‘공소권 없음’ 결정날 듯

### 전두환 재판과 추징금은

### 헬기사격 확정 판결없이 마무리 956억 추징금도 환수 어려워

전두환씨 사망으로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도 끝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종결될 전망이다.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전씨의 사과·반성을 듣기 위해 41년을 기다려온 희생자들의 바람도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역사적 단죄’ 재판 끝내 못 끝내=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예정된 사지(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을 심리하면서 ‘공소기간 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기간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판결로 ‘공소 기간’ 선고를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할 때로 나뉘는데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형사소송법 328조 2항)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되면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인정한 역사적 판결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채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등 ‘역사적 단죄’에 대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사재판의 경우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자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가 숨졌지만 민사소송법(233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절차를 통해 재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진

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전두환의 상속재산을 29만원 뿐이라며 상속을 포기하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들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법조계 관측도 나온다.

◇추징금 956억 끝내 못 받을 듯=전씨 사망으로 전씨에게 받아내야 할 추징금 956억원도 환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파악한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에 이른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 수준인 1249억원이 환수된 상황이다. 법무부 상위 추징금 미납자 20명 중 8번째가 전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채무는 유산과 함께 상속되지만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24년 간 재산 목록을 확인, 1200여억원을 찾아냈다. 추징은 1997년부터 이뤄졌지만 전씨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미루면서 10년 동안 추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형질세포 비정상적 증식 혈액암 노년층 주로 발생...남성 > 여성

### 전두환 사망 원인 ‘다발성 골수종’

전두환 씨가 지병인 ‘다발성골수종’을 앓다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질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발성골수종은 백혈병, 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으로 구분되며, 전체 종양의 1~2%를 차지한다.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중반으로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률이 높다. 40대 이하 발병률은 5%미만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2018년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환자는 1718명, 2009년 발생한 1037명보다 66% 증가한 수치로 그해 전체 생존율은 70.3%이다.

‘다발성골수종’은 백혈구의 종류인 형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돼 나타나는 혈액암으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골수를 침범하므로 다발성골수종으로 부른다. 형질세포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면 바로 항체를 만들어 내고 외부 유입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인 면역 단

백을 분비한다. 다발성골수종 세포(비정상적인 형질세포)는 M-단백이라는 비정상적인 항체를 만들어 골수에 쌓이게 하고 콩팥 손상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뼈가 잘 부러지거나 통증을 유발하며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감소해 감염과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방사선, 화학물질 노출(농약, 살충제, 석유 등), 유전적 요소 등이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발성골수종’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환자의 70% 정도에서 발생하는 빈혈이 있고 다음으로는 골병변에 의한 통증이 있다. 골절과 뼈가 녹아 내리는 골 용해로 인한 뼈 손상이 초래되고 칼슘이 혈류로 유입되는 고칼슘혈증과 이와 관련된 증상(식욕감퇴, 오심, 구토, 빈뇨, 갈증, 변비, 피로감, 의식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신기능감소, 피로, 체중 감소 등도 나타날 수 있다. 다발성골수종은 반복되는 재발로 완치가 힘든 질병이다. 3기인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30% 전후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분할합병 및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세도 [김]과 주식회사 세하인드스트리 [윤]는 2021년 11월 23일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김”의 영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윤”이 합병하고 “김”과 “윤”은 존속하기로 하며, 합병 제330조의 9 제3항의 결의 절차를 밟아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 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고함.  
면허의종류 : 전기공사업(등록번호 : 제 광주-00239 호)  
2021년 11월 24일  
“김” 주식회사 세도 ☎062)267-2800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347번길 11(삼각동)  
대표이사 최진용  
“윤” 주식회사 세하인드스트리 ☎062)951-1573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347번길 11(삼각동)  
대표이사 최진용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69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연 222-9171  
• 광 산 571-7688 • 오 지 266-78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통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명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명 671-7276  
서 구 • 광 전 382-5788 • 신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지 명 376-6511 • 통 명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0-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